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지방도시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,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·지원하도록 법으로 명시함(제2105489호, 2020. 12. 8. 공포). 이에 개정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동 개정안을 제안함.

3. 주요내용

가. “인구감소지역의 지정절차(안 제2조의 3)”

나. “부문별 시행계획 등 자체평가 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포함”(안 제12조)

다. “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(안 제15조의 11)”

- 1) 사회간접자본 정비, 교육·문화·관광시설 확충, 농림·해양·수산업 지원, 주택건설 및 개량, 산업단지 지정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
- 2)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의 법 제16조의3 제2항 각 호 승인·허가 신청에 대한 사무 지원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3(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) ① 법 제2조제9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”이란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(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중 인구감소율, 출생률, 65세 이상 고령인구, 14세 이하 유소년인구, 생산가능인구, 인구감소의 지속성,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지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·도에 속한 시·군·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“국가혁신융복합단지”를 각각

“국가혁신융복합단지,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 3항 중 “시행계획”을 “시행계획,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”으로 한다. 제15조의11부터 제15조의16까지를 각각 제15조의12부터 제15조의17까지로 하고, 제1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11(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 16조의3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산업단지, 교통시설, 상하수도 시설, 생활인프라 등 기반시설의 설치·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 지원
2. 각급 학교·문예회관·도서관·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, 관광·숙박·위락 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·유치 지원
3. 농림·해양·수산업 생산기반 확충 및 농축수산물 등 특산품의 홍보·판매촉진 등을 위한 지원
4.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 개수·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
5. 인구감소지역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의 연계·제공·활용·분석·의사결정 및 협업에 관한 업무 지원
6. 법 제16조의2 각 호의 시책 추진을 위한 비용의 지원
7.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의11제1항 각 호와 관련된 공모사업의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.
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의11제1항 각 호의 사업들이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내에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복합용지의 면적을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75 이하로 계획할 수 있다.
- ⑤ 법 제 16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기업 대상 수요조사, 산업전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입주 수요가 확인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.
- ⑥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·도 지역혁신지원단(이하 “혁신지원단”이라 한다)은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가 법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인·허가(이하 “허가등”이라 한다) 신청 사무에 대하여 문서로 지원을 요청하면,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. 다만,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⑦ 혁신지원단은 제4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요청의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요청자에게 문서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요청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.
- ⑧ 법 제16조의3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별표 1의 2의 처리기간을 말한다.

⑨ 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별표 1의2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허가등의 신청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허가등의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처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5조의13(중전의 제15조의12)제2항 전단 중 “제15조의11제2항”을 “제15조의12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제15조의11제3항”을 “제15조의12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15(중전의 제15조의14)제1호 중 “제15조의11제2항”을 “제15조의12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제15조의13”을 “제15조의14”로 한다.

제15조의16(중전의 제15조의15) 중 “제15조의14”를 “제15조의15”로, “제15조의11제3항”을 “제15조의12제3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조의3(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) ① 법 제2조제9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”이란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(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중 인구감소율, 출생률, 65세 이상 고령인구, 14세 이하 유소년인구, 생산가능인구, 인구감소의 지속성,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.</u> <u>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지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</u>

제12조(부문별 시행계획 등의 자체평가)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문별 시행계획, 시·도 시행계획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(이하 “부문별 시행계획등”이라 한다)의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계획을 세우고,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추진 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전년도 시·도

있다.

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·도에 속한 시·군·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12조(부문별 시행계획 등의 자체평가) ① -----

-- 국가혁신융복합단지,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국가혁신융복합단지,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-----

③ -----

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시행계획,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-----

-----.

제15조의11(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산업단지, 교통시설, 상하수도 시설, 생활인프라 등 기반시설의 설치·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 지원
2. 각급 학교·문예회관·도서관·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, 관광·숙박·위락 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·유치 지원
3. 농림·해양·수산업 생산기반 확충 및 농축수산물 등 특산품의 홍보·판매촉진 등을 위한 지원
4.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 개수·보수

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
지원

5. 인구감소지역 지원 사업의
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
위한 데이터의 연계·제공·
활용·분석·의사결정 및 협
업에 관한 업무 지원

6. 법 제16조의2 각 호의 시책
추진을 위한 비용의 지원

7.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원
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
조의11제1항 각 호와 관련된 공
모사업의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
지역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
조의11제1항 각 호의 사업들이
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
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
인구감소지역 내에 조성되는 산
업단지의 지정권자는 「산업입
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
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
조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복
합용지의 면적을 산업시설용지

면적의 100분의 75 이하로 계획할 수 있다.

⑤ 법 제 16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기업 대상 수요조사, 산업전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입주 수요가 확인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.

⑥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·도 지역혁신지원단(이하 “혁신지원단”이라 한다)은 인구감소 지역에 입주한 사업자가 법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인·허가(이하 “허가등”이라 한다) 신청 사무에 대하여 문서로 지원을 요청하면,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. 다만,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.

⑦ 혁신지원단은 제4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요청의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요청자에게 문서로

	<u>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요청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.</u> <u>⑧ 법 제16조의3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별표 1의2의 처리기간을 말한다.</u> <u>⑨ 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별표 1의2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허가등의 신청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허가등의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처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</u>
<u>제15조의11</u> (생략)	<u>제15조의12</u> (현행 제15조의11과 같음)
<u>제15조의12</u> 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) ① (생략)	<u>제15조의13</u> 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위기대응	② ----- -----

특별지역이 지정 기간 만료시점에 제15조의11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5조의11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5조의13 (생략)

제15조의14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관한 보고서)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(「지방자치법」 제2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장은 법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제15조의11제2항의 기준에 따른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의 경제 상황 분석
2.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

-- 제15조의12제2항-----

----- 제15조
의12제3항-----
-----.

제15조의14 (현행 제15조의13과
같음)

제15조의15(산업위기대응특별지
역에 관한 보고서) -----

1. 제15조의12제2항-----

2. -----

에 대한 <u>제15조의13</u>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3.·4. (생 략) <u>제15조의15</u>(산업위기대응특별지 역의 지정 해제)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 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에 관한 <u>제15조의14</u>에 따른 보 고서를 검토하여 지원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, <u>제15조 의11제3항</u>에 따른 협의를 거쳐 야 한다. <u>제15조의16</u> (생 략)	----- <u>제15조의14</u>----- ----- 3.·4. (현행과 같음) <u>제15조의16</u>(산업위기대응특별지 역의 지정 해제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15조의15</u>----- ----- ----- <u>제15조의 12제3항</u>----- -----. <u>제15조의17</u> (현행 제15조의16과 같음)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3 - 4419